

# “아이 낳기 좋은 도시라더니”...광주 수유시설 태부족

가족수유실·착유실 등 69개소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 4위  
지자체·지하철 등 이용 불편

광주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엄마들이 모유 수유할 공간인 수유시설 설치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수유시설이 적은 탓에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마련된 수유시설마저도 편차가 크고 일부 시설은 겨우 구색만 맞추고 있어 수유모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다.

수유정보 알리미에 따르면 광주지역 수유실은 총 69개소(가족 수유실 47개소·모유수유·착유실 22개소)가 마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29개소), 대전(57개소), 제주특별자치도(68개소)에 이어 4번째로 수유시설이 적은 수준이다.

또 광주지역에는 공공청사 및 백화점, 도서관 등에 수유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각 시설마다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유가 많은 백화점 내 가족수유실에는 휴식 공간을 비롯해 기저귀 교환대, 정수기 등 체계적이고 쾌적한 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일부 수유시설은 구색만 겨우 갖춘 모습이었다.

25일 찾은 광주 서구 광주 신세계 백화점 6층 유아휴게실은 하루 평균 100여명



25일 광주 서구 가족수유실 출입문에는 ‘이곳은 엄마와 아이를 위한 공간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이 방문하는 등 수요가 많은 곳이다. 쾌적하고 넓은 휴게실 내부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기저귀 교환대, 쉼터 등이 마련돼 있었다.

광주 남구의 한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넓은 수유시설이 마련돼 있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자주 드나드는 모습이 었다.

반면 광주 북구청의 ‘가족 수유실’이 안 내데스크 뒤편에 마련돼 있는 탓에 이용이 불편할 뿐더러 에어컨이 갖춰지지 않아 더운 날씨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광주지역 내 도시철도에 마련된 수유시설도 마찬가지다. 금남로4가역과 운천역 단 2곳에만 수유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찾은 운천역 내 모유수유실은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내 창구로 찾아가 명단을 작성한 뒤 담당자가 출입문을 열어줘야만 한다. 이러한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만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탓에 수유모들이 평상시에 쉽게 드나들 수 없어 한 달에 한두명 가량의 시민들만 이곳

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모 임모(38)씨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깨끗하게 관리된 수유시설이 있는 곳을 자주 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내 수유시설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유실이 있더라도 안내표시가 잘못돼 혼동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권고하는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족수유실은 아빠를 포함한 4인(1가족)이 수유·기저귀 교환·이유식 등

육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모유수유·착유실은 엄마·아기·수유부로 이용 대상이 제한되며 2인(1가족)이 모유수유 또는 모유착유를 할 수 있게 조성된 장소를 말한다.

광주 서구청의 경우에는 가족수유실로 등록돼 있음에도 출입문에 ‘이곳은 엄마와 아이를 위한 공간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 수유부들의 이용에 혼선을 주고 있었다.

이에 광주 서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유실을 상시 개방하고 있다”며 “기존에 모유수유실로 이용되던 곳이라 안내 문구에 착오가 있었다. 수유부들의 이용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문구를 교체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유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광주시는 아직까지 별도의 시설 확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유시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으며 아직까지 내년 수유시설 추가 설치 계획은 없다”며 “수유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청결도 등을 점검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956명 △2022년 7446명 △2023년 6172명으로 꾸준히 감소 중이다. 올해 1~8월 출생아 수는 4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 줄었다.

글·사진=정성아 기자

## “피임 조심” 발언에 ‘성희롱 징계’... 2심도 징계 취소

직장 동료에게 “남자친구와 피임에 신경써야 한다”는 발언을 해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직원 A씨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상대로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문화전당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

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해 2월 A씨에게 내린 ‘불문 경고’ 처분이 위법,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동료 직원 B씨와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던 중 B씨가 남자친구가 가정과 아이를 빨리 꾸리고 싶어 하는데 결혼을 늦추고 싶다고 말하자

A씨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남자친구랑 피임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 애들이 임신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조언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서두르기 위해 임신의 의도를 할 수 있으니 피임에 신경써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이후 내부 고충심의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돼 A씨에 대해 ‘견책

징계 의결이 내려졌다.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 불문경고 감경을 받은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고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보이지만, ‘피임’과 관련된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발언이 성적 언동에 비추 판단돼야 한다”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은 “피해자

가 듣기에 매우 불쾌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피해자가 원고에게 기대한 조언의 범주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문화전당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원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은 정당하므로 피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헌기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밸런스 라인